

구미시수입중지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00. 12.

제출자 구미시장

1. 제 안 이 유

- 행정정보종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통한 민원접수 및 처리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주민에게 제약을 주는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함.
-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수입금에 대하여 일일 결산하도록 함.
- 직원복지회에서 판매계약을 신청할 경우 우선계약 할 수 있는 조항 삭제
- 판매인이 수입중지를 일정수량 보유의무 사항 삭제
- 판매인 계약 취소 조항 삭제

3. 참고사항

- 무인민원증명발급시스템 운영지침 — 정보기획 12410-80 (2000.10.25)
- 입법예고 : 구미시 공고 제353호 및 382호
-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등록사무

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) ① 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(이하 “무인발급기”라 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②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,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무인발급기고유번호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8조제3항중 “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”를 “판매인으로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제21조 제목중 “계기사용”을 “계기 및 무인발급기사용”으로 하고, 동조제1항중 “제5조의”를 “제5조 및 제5조의2의”로 하고, 동조제3항중 “계기의”를 “계기 및 무인발급기의”로 하고, “계기상의”를 “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의”로 하며,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【별지제11호서식】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,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【별지 제11호서식】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1호서식】

무인발급기 수입증지 요금관리 대장

무인발급기번호 :

(단위 : 원)

[illegible]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설></u>		<u>제5조의2 (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) ①</u>		<u>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(이하 “무인발급기”라 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u>
		<u>②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 되어야 한다.</u>		
		<u>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,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무인발급기고유번호,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.</u>		
제8조(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)		제8조 (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)		
①~② (생략)		①~② (현행과 같음)		
③ 시장은 직장새마을금고,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(이하“직장금고”라 한다)에서 판매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<u>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</u> 계약할 수 있다.		③ ----- ----- ----- <u>판매인으로</u> -----		
④ (생략)		④ (현행과 같음)		
제11조(판매인의 의무) ① (생략)		제11조(판매인의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		
<u>②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.</u>		<u><삭제></u>		
<u>제14조 (계약의 취소) ① 시장은 판매인으로</u>		<u><삭제></u>		

